

#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용복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1. 안 건 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용복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2년 8월 23일(목)

나. 제 출 자 : 마포구청장

## 3. 복지도시위원회 회부일자

2012년 8월 28일(화)

## 4. 제정근거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나.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 5. 검토의견

0 본 조례안은 안 제3조에서 센터가 수행하는 주요사업을 고용 복지통합 자립지원서비스와 직업기능훈련 및 직업능력향상 사업 그리고 취업정보제공 및 취업알선 등으로 개정하여 실질적 사업 중심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4조제1항 중 여성, 청소년, 장애인 등을 취약계층 지역주민으로 하며, 자치법규 부패영향 자율평가 검토결과에 따른 권고에 따라 안 제6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신설하여 시설의 관리·운영의 효율성과 특성을 고려하여 수탁자 선정에 필요한 기준 및 방법 등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르도록 하는 등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0 안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시설”은 위탁하고자 하는 대상 시설로 안 제2조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용복지지원센터”를 “센터”로 약칭을 사용하기로 하였으므로 “시설”을 각각 “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및 제23조에 따른다.”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2012년 8월 3일 일부개정되어 종전의 “제22조의 2”는 “제21조”로, 종전의 “제23조”는 “제21조의 2”로 각각 조문 이동됨에 따라 이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 2에 따른다.”로 수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0 안 제8조제1항 중 “5명 이상 10명”은 고용복지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센터에 운영위원을 두고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한다는 것으로 2012년 8월 3일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4조에서 “운영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5명 이상 10명”을 “5명 이상 15명 이하의”로, 조례 제8조제1항 중 “이내로 구성한다”를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각각 수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관 계 법 령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12.8.5] [보건복지부령 제147호, 2012.8.3, 일부개정]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 (평가를 한 경우에 한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5, 2012.8.3>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당해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11.5>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11.5>

④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개정 2007.3.7, 2008.11.5>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

⑤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이 규칙에 정한 것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4.9.6]

[제22조의2에서 이동 , 종전 제21조는 제23조로 이동 <2012.8.3>]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4.9.6, 2012.8.3>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이내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04.9.6, 2012.8.3>  
[제23조에서 이동 <2012.8.3>]

제24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법 제36조제2항 각 호 중 같은 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2명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8.3>